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제안년월일 : 2008. 6. 25.

제안자 : 민경환 의원

### □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(2008. 1. 1) 및 전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폐지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
- 소관부서가 조정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법규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.

#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명칭변경(제2조, 안 제3조)
  - 행정자치위원회 → 행정소방위원회
-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폐지사항 반영(안 제3조)
  - 자치행정국 → 행정국
  - 복지여성국 → 보건복지여성국
  - 경제투자본부 → 경제통상국
  - 농정본부 → 농정국
  - 건설재난관리본부 → 건설방재국
  - 균형발전본부 → 균형발전국
  - 생명산업추진단 → 삭제
- 시행일 조정(안 부칙)
  - 2008년 1월 1일 → 공포한 날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행정자치위원회”를 “행정소방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자치위원회”를 “행정소방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자치행정국”을 “행정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“복지여성국”을 “보건복지여성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“경제투자본부”를 “경제통상국”으로 “농정본부”를 “농정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가목 중 “건설재난관리본부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발전본부”를 “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문화관광환경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.

안 부칙 중 “2008년 1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생략) 1. (생략) 2. <b>행정자치위원회</b> 7인 3.~5.(생략)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~5.(현행과 같음)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<b>행정소방위원회</b> ... 3.~5.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행정자치위원회 가. 공보관실, 감사관실, 정책관리실, 자치행정국, <b>균형발전본부</b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략) 다. (생략) 3. 교육사회위원회 가. 교육청, <b>복지여성국</b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략) 다. (생략) 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<b>경제투자본부, 농정본부</b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략) 5. 건설문화위원회 가. <b>건설재난관리본부, 문화관광환경국, 소방본부</b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<b>생명산업추진단</b> 소관에 속하는 사항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b>행정자치위원회</b> 가. .... ..... <b>자치행정국, 소방본부</b> .....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 3. 교육사회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 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5. 건설문화위원회 가. <b>건설재난관리본부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발전본부</b> ..... ..... 나. (현행과 같음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<b>행정소방위원회</b> 가. .... ..... <b>행정국, 소방본부</b> ..... 나. (개정안과 같음) 다. (개정안과 같음) 3. 교육사회위원회 가. .... <b>보건복지여성국</b> ..... ..... 나. (개정안과 같음) 다. (개정안과 같음) 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<b>경제통상국, 농정국</b> ..... 나. (개정안과 같음) 5. 건설문화위원회 가. <b>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문화관광환경국</b> ..... ..... 나. (삭제)
	부칙 이 조례는 <b>2008년 1월 1일</b> 부터 시행한다.	부칙 ..... <b>공포한 날</b> ..... .....